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내 신기술·신제품의 인증제도에서 ‘인증’의 용어를 ‘지정’으로 변경 (안 -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8조의4, 제18조의5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0조의4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9조, 제57조)

가. 개정 이유

- 상위법인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(법률 제21154호, '25.12.2. 개정)」에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’의 용어가 ‘신기술·신제품 지정’으로 개정*됨에 따라, 동법 시행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

* (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이유)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 제도’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, 규격,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·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, 지원·육성 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, 제도의 명칭을 ‘인증’에서 ‘지정’으로 변경

나. 개정 내용

-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, 해당 조문*에 사용된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’ 관련 용어를 ‘인증’에서 ‘지정’으로 변경

*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8조의4, 제18조의5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0조의4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9조, 제57조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